

충청북도 농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993. 3. 4

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3년 1월 27일

· 회부일자 : 1993년 1월 29일

다. 상정일자 : 제8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 (1993. 3. 4)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건설국장 이, 종 익)

가. 제안이유

- 농촌 지붕개량 사업 및 농촌주택 사업중 시범사업으로 태양열 이용시설 설치에 용자하였던 자금상환이 완료됨에 따라 관련조문 삭제와 자금의 용자신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함.

나. 주요골자

농촌 지붕개량사업, 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 농촌주택개량사업, 태양열 시범주택개량, 변소개량 용자금 지원사업, 간이 태양열 이용시설등의 삭제와 회계 공무원관직 지정 신설, 자금의 용자 신청시 현실에 맞게 관서 조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오 병 천)

농촌 지붕개량 사업 및 농촌주택 사업중 시범사업의 용자금 상환이 완료됨에 따라 동 태양열등의 이용시설 삭제와 농촌주택사업특별회계의 경리에 관하여 일반회계를 준용하여 회계직 공무원을 지정하였던 것을 동 회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해당 부서의 회계관직 공무원 관직지정을 신설하고 자금의 용자신청등의 업무를 효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기 농협으로 대여 되어 있는 자금의 용자 신청자의 적부등을 실질적으로 판단 할 수 있는 해당 시장, 군수로 조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석위원 5인 만장일치)

7. 소수의견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 첨부서류

가. 충청북도 농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1부.

나. 신규조문 대비표 1부.